

## 준법정신



## 민철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에 맞는 법과 규정을 제정해놓고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공동 사회 체제 속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륜 도덕이다. 이는 사람이 남들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동양사상 속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그 으뜸으로 여겨왔다고 오늘날에도 그 기본정신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비해서 법이란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목적은 강제성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인륜이나 도덕 윤리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법의 제정 없이도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악이 성행되고 패륜이 들끓는 곳에서는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여 이를 방지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고로 인성이 착하고 어질면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해서 주위의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대처럼 복잡하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윤리 도덕이라는 기본적인 덕목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다.

예를 들면 공해방지법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가스의 배출량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윤리도덕에만 맡길 수 없으며, 일정한 수치를 정해서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는 산업 안전 보건법만 하더라도 모법을 비롯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매우 광범위하며 보통 부피의 책권권이 되고도 남는다. 이 법은 처음에는 근로기준법 안에 몇조문이 끼어있던 것이 단독법으로 독립발전하게 된 것으로, 오늘날처럼 광범위한 법태두리 안에서 우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 분야를 통틀어 법조문은 선진국의 장점만을 골라서 이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

다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다름아닌, 법이 제정되어 공포가 되었으면 국민 모두가 이를 꼭 지켜야겠다는 준법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금과옥조를 가진들 무슨 소용있으랴. 이를 지키지 않을 줄 모르고 외면한다면 강제성을 띄우고 제재를 가해야 할 법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한갓 유야무야한 부도수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지켜야 할 사항만을 취급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한 법은 국민에게 불신감만 가져다 줄뿐 급기야는 이 파급효과가 커지면 덩달아서 잘 지키고 있던 다른 법도 무시하게 되는 나쁜 연쇄반응을 몰고오게 된다. 현형 비현령식의 애매한 법이나 광범위한 울가미식의 법은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준법정신이 강한 국민들로부터도 오히려 위화감을 자아내게 되고 끝내는 법을 무시하는 사태까지도 이르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은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채택하고, 일단 입법 공포되었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시·감독 하는 것이 정부당국에서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법을 악용해서 생산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면서 일선 기업주나, 담당자를 골탕 먹였던 과거의 누습은 이제는 더 이상 논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사회에서는 아직도 법보다는 정신·의리·지연·학연이 앞서고 있다. 일단 사건이나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에는 이를 법조문에 따르려는 경향보다는 정신에 의존하려는 태도가 뚜렷하다. 해당관서에 찾아갈 일이 생기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조문을 참조하기 보다는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연줄이 닿을 만한 사람이 없나 하고 그일 부터 몰두하는 것이다. 크게 지양해야 할 일이다.

준법정신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는 미합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그나라에서는 세계의 여러민족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의 내용도 매우 실용적이라고 한다. 한 예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업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근로자 중에서 직업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자그마치 한사람당 1억불이라고 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수백만불이면 시설이 충분한 마당에 이를 어기고 1억불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기업주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법질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도와 이와 같은 것은 곧바로 본받아도 좋을 것 같다. 62

<안전 전문가>